산 림 환 경 과

위원회별	소관부서	감사항목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계	완결(계속추진)	추진중	
산업건설위원회	산림환경과	10	7	7	6	1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산림환경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4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 사후관리 철저	○ 금원산 단풍림 조성을 위하여 3개년에 걸쳐 1만여본 이상의 단풍나무 식재를 하였음. 그런데 나무를 심었으면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나무에 칡덩굴을 비롯해서 덩굴류가 타고 올라가 홈을 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 나무와 풀이 같이 크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심는 것만 산림조합에 위탁을 였다고 하는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단풍림 조성지에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단풍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음. ○ 06년 풀베기 사업 실시 : 풀베기 작업시 덩굴을 제거함.	완 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산림환경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5	토석채취 허가지역 사후관리 철저	○ 우리군내에 채석장이 16개소에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잘하는 곳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 채석장 16개소에 대하여 매분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소음, 분진 등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을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으로 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음.	완 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산림환경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6	간벌사업 지도 철저	○ 간벌이나 골라베기는 사업지침에 따라 수행하 여야 하고 나무를 잘랐으면 들어내거나 한쪽으로 모아 두어야 하는데 그대로 숲속에 방치하므로서 산불이나 2차사고가 우려되고, 사업 시행시 공개입찰로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질 높은 사업 추진이 될것로 생각되는데 검토하기 바람.	○ 간벌이나 골라베기 사업시 벌목부산물은 수해, 산불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토록 설계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내 작업이라는 특수성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애로점이 있으며, 산림청“지속가능한 숲가꾸기사업 지침”에 의거 계곡부, 하천의 홍수위, 도로, 임도 등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부산물 수집을 하고 있음. ○ 06년 숲가꾸기사업 공개입찰실시 : 괴산 증평 산림조합 계약.	완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산림환경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7	합천댐지원사업에 대상지확대 검토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관계법에 의하면 수질보존 기준내로 수질을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에 의하면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대상지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그리고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10㎎/ℓ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BOD가 주민의 자율적 노력전의 5분의1이내 또는 3.3㎎/ℓ이내,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ℓ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BOD가 주민의 자율적 노력전의 1/3 이내로 줄인 지역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써 우리군 관내지역은 평균BOD가 1~1.5㎎/ℓ로써 주민의 자율적 노력과 수질개선방법을 실시해도 현실적으로 BOD 1/3 이내로 저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주민지원 사업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토록 하였음.	완 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산림환경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8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 철저	○ 덩굴류 제거사업은 나무의 생육을 촉진하고 양질의 숲가꾸기를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림조합으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2005년도에도 308ha를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였는데 현장 답사 결과 정작 필요한 부분은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약제처리가 미흡하고 도로변이나 가시권 일부분만 사업을 시행했다는 여론이 있고 대상 사업장이 너무 넓고 많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과 준공 검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사업량을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덩굴류 제거사업의 물량을 줄여 사업 감독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한 부분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음 ○ 06년 덩굴제거 사업량 : 65.5ha	완 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산림환경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9	소각장 건설 사업 추진철저	○ 소각장 건설 사업은 우리군민들의 초유의 관심사업으로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군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종합하면 기술제안서공모 결과 열분해 용융방식을 제외한 열분해방식에 의한 기술제안서만 접수되어 신청자 중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자 선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개 요 - 위 치 : 현 생활폐기물매립장 부지내 - 시설규모 ┌면적 : 5,450㎡(건축1,855㎡) └용량 : 30톤/일(24시간 가동) - 사업비 : 7,355백만원(국비 2,206, 지방비 5,149) ※ 공사 감리비용 : 355백만원 포함 ○ 추진사항 - 공사착공 : 2006. 4. 24 - 쓰레기 저장조 등 지하시설 완공 ※ 현공정율 : 35% 정도 ○ 향후 추진계획 - 건축완공 : 2007. 4월 - 시 운전 : 2007. 5월 - 10월 (6개월간) - 준 공 : 2007. 10월.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산림환경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0	굴취목 반출에 대한 감독 철저	○ 개인이 굴취목 허가를 받아 반출할 경우 굴취와 반출에 따른 불법 행위가 많다는 여론이 있음으로 굴취 후 복구 및 반출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개인의 굴취목 허가를 할 경우 수시 현장 지도를 통하여 불법반출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 사업 완료 후에는 허가시 복구계획과 같이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토록 하였으며, 위법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완전복구가 되도록 조치하였음.	완 결 (계속추진)	